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아이웍스
○ 대상제품 : Cisco MDS9148S-12Port 2대, Lenovo, 7Y74D04W00 1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886,36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아이웍스 대표이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한결피아이에프
○ 대상제품 : 저장분배장치(SCALESTOR-X8400 1대, 스토리지디스크(20TB))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9,014,1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 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한결피아이에프 대표이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송우인포텍
○ 대상제품 : 가상화서버 3대, San Switch 1대, 차번인식S/W 1식,
선별관제 솔루션(아이비즈 v2.0*100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26,438,87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송우인포텍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엠스톤
○ 대상제품 : 디스플레이서버(4CH) 6대, 저장분배서버 4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4,273,71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엠스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굿링크
○ 대상제품 : 영상회의 코덱 및 카메라(Room Kit plus P60)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1,112,2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굿링크 대표이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아이티로그인
○ 대상제품 : 네트워크스위치(Cisco C9200L-24T-4X 4대, Cisco C9407R 2대
Cisco C9400-LC-24XS 2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13,734,35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 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아이티로그인 대표이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이노뎁(주)
○ 대상제품 : VMS(마스터, 저장분배, 카메라라이센스, 클라이언트모니터링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1,522,58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이 노 뎁(주)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 . 공급사 : ㈜지오멕스소프트
○ 대상제품 : 정보연계 통합플랫폼 패키지 1식, 영상중계 스트리밍 S/W 1식, RTSP 제공 S/W 1식, 경찰청 스트리밍 S/W 1식, S-서비스 1식, 영상반출시스템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9,427,69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 . 공급사명 ㈜지오멕스소프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스마트도시협회
○ 대상제품 :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4,488,18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스마트도시협회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주)디케이앤트
○ 대상제품 : AI분석솔루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4,822,79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디케이앤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안랩
○ 대상제품 : AhnLab TG5000A 1식, AhnLab TG5000B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6,004,410 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안랩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지니언스(주)
○ 대상제품 : Genian NAC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4,726,160 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 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지니언스(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휴네시온
○ 대상제품 : I-oneNet V5.0 3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9,503,04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휴네시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주)시큐어키
○ 대상제품 : CCTV패스워드관리솔루션 (관리서버1대, 라이센스 700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3,071,68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시큐어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채울
○ 대상제품 : UTMP V3.1 Manager, PC Agent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789,03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채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엑스게이트
○ 대상제품 : AXGATE 90 2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580,28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 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엑스게이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거창군
○ 제조사·공급사 : ㈜시큐아이
○ 대상제품 : BLUEMAX NGF 300 1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거창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서비스 사업 그룹 3256400804179366591109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u>금액 328,980원(부가세포함)</u>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발주기관명 거 창 군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아이 대표이사 (인)